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511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 A (개명 전 이름 : B)
	2. C
	3. D (개명 전 이름 : E)
	4. F (개명 전 이름 :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7511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3.
판 결 선 고	2020. 2. 7.

주 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각 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도표 내 합계란의 "1,128,083,000"을 "1,128,081,000"으로 고친다.

○ 6면 20행의 "모국에서"를 "기회가 된다면 모국에서"로 고친다.

○ 8면 7, 8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3) 망 H 및 원고 A의 J에서의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고, 그 밖에 망 H은 [redacted]에서 K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로 고친다.

○ 9면 4행의 "갑 제8, 9, 24, 25, 29호증"을 "갑 제8, 9, 24, 25, 29, 42, 68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9행의 "갑 제12, 19호증, 을가 제1, 5, 7, 12호증"을 "갑 제8, 12, 19, 39,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41, 57호증, 을가 제1, 5, 7, 10, 12, 17호증"으로 고친다.

○ 10면 15, 16행의 "2012. 7.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을가 제7호증의 4, 을가 제12호증의 5 참조)"를 "2012. 6. 24.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J"을 "J과 K"로 고친다.

○ 11면 3행의 "송금한 점"을 "송금한 점, 그 외에도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들에게 명목을 알 수 없는 돈이 여러 차례 송금된 점, 원고 C은 망 H의 사망 이후인 2012. 11. 2. AJ로부터 [redacted]구 AK아파트 AL호를 83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으로 고친다.

○ 11면 16행의 "을가 제5호증"을 "갑 제39, 57호증, 을가 제5호증"으로 고친다.

○ 11면 17행의 "보일"부터 20행의 "(을가 제5호증)"까지를 "보일 뿐인 점, 망인은 일본에서 J과 K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 12면 5행의 "(사기))"를 "(사기)등"으로 고친다.

○ 12면 6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망인은 2001. 2. 13.부터 2003. 7. 5.까지 24차례에 걸쳐 국내에 입출국하였고 그 기간에 국내체류일수는 311일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국내 입출국 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비교적 빈번하게 국내에 입출국하였던 망인이 2003. 7. 5. 이후 국내에 입출국하지 못한 이유는 위 내사중지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으로 고친다.

○ 12면 11행의 "어려운 점"을 "어려운 점, ㉣ 망인은 [redacted]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득세 신고를 한 점(망인은 2015. 6. 16.경 국내에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면서 종합소득금액을 17,529,563,451원으로 신고한 바 있다)"으로 고친다.

○ 12면 13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제2호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 13면 21행의 "기재"를 "각 기재"로 고친다.

○ 15면 12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다(따라서 위 각 주소지를 망인의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7-20

[표 1]

피고	처분일	세목	귀속연도	부과세액
[redacted]세무서장	2017. 5. 26.	종합소득세	2009년	897,631,410원 (가산세 441,011,852원 포함)
	2017. 9. 12.		2010년	862,121,540원 (가산세 403,770,107원 포함)
			2011년	821,411,220원 (가산세 357,629,404원 포함)
			2012년	726,850,390원 (가산세 260,298,222원 포함)
			2013년	100,716,890원 (가산세 30,749,107원 포함)
			2014년	47,245,740원 (가산세 12,033,411원 포함)
합계				3,455,977,190원 (가산세 1,505,492,103원 포함)

[표 2]

피고	처분일	세목	귀속연도	부과세액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7. 5. 26.	지방소득세	2009년	89,763,140원
	2017. 9. 12.		2010년	86,212,150원
			2011년	82,141,120원
			2012년	72,685,040원
			2013년	10,071,690원
			2014년	4,724,570원 (가산세 1,203,340원 포함)
합계				345,597,710원 (가산세 1,203,340원 포함)